

소규모 건설현장 시스템비계 활성화를 위한

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안내

I. 사업의 개요

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시스템비계 임대·설치·해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(10억 이상은 50%)까지, **같은 현장별 최대 2,000만원** 까지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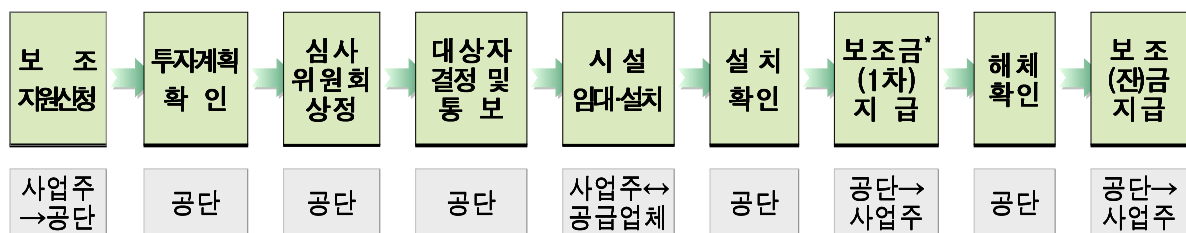
가. 목 적

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하여 추락재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확보된 시스템비계 설치 시 시스템비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규모현장 추락재해를 예방하고자 함

나. 예 산 : 170억원(2016년)

다. 시행기간 : '16년 예산 소진 시 까지

II. 보조금 지원 절차



* 보조금(1차)지급 : 보조금(1차)지급을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결정금액의 최대 70%까지 지급 가능

III. 보조대상

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(부가세 포함)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

<보조대상 제외>

- ①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- 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- 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
나. 보조 대상설비

①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인 시스템비계* 일체

* 시스템비계 : 건축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, 수평재, 가새재, 승강통로, 안전난간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

※ 안전인증제품 미사용 및 보조시설의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결함이 있는 불량자재를 임대·설치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
② 안전방망* : 추락방지망을 제외한 안전방망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에 한하여 지원

* 안전방망 종류 : 플라잉넷, 수직보호망, 추락방지망

※ 안전인증제품 미사용 및 보조시설의 부식 또는 파손 등의 중대결함이 있는 불량자재를 임대·설치하는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

③ 사다리형 작업발판*

- 지원 한도 : 현장 당 3개 이내 및 동일 사업주당 연간 9개 이내
- 전도 및 추락 우려가 높은 기존 A형 사다리는 제외

IV. 보조한도

가. 보조한도 : 같은 현장 당 2,000만원 이내

나. 지원기간 : 최대 5개월 이내

- 투자완료(설치확인)요청기한 :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

V. 사업 참여방법

가. 보조지원 사업주

- ① **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지원 신청서(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포함)를 작성하여**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**공단**의 **지역본부/지사**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
※ 신청서 제출 시「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(붙임1-1서식)」를 작성하여 같이 제출
- ② 공단에서 보조지원 대상 결정통보를 받은 사업주는 **공단에 등록된 공급(임대)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** 시스템비계 설치

나. 공급(임대)업체

- ① 대 상 : '16년 공단 클린사업 공급(임대)업체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
- ② 등록방법 :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본부(건설재해예방실)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(연중 수시)

☎ 연락처(담당) : 052-7030-673

☞ 주소 : (681-230)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(북정동)

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클린사업 담당자 앞

<참고>

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의 설치비교

□ 시스템비계



[안전난간]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
[작업발판] 작업자가 딛고 서서 작업하기 위한 시설

□ 강관비계

